



최근 쏟아지는 3대 반기업법안

고광용·김상엽·김시진·이호경·한규민

순서	법안	진행과정	주요 내용	리뷰(Review)
1	상법 개정	7.3. 국회 본회의 통과 7.15. 국무회의 의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이사는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실제 주주와 아무런 계약관계 없음. 주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게 일반적으로 확립된 판례임 •소송·업무상 배임죄 고발 등 무분별한 분쟁 증가 가능 •반복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사들의 과도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이사회 결의 때마다 주주 반대 혹은 이사 상대 손해배상 책임 소송 진행 시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사들은 개인 위법사항에 화살탄을 쏠 수 없어 수년간 정신적·물질적 피해 발생 •이사의 소극적 경영으로 이어져, 위험수반 중장기 전략적 성장 전략 회피 가능성 높아 성장 정체 가능성 높아짐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의무선임비율 조정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 겸직한도 제한 규정 탓에 법률상 결격사유 혹은 회사 외부자인 사외이사가 기업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정보 취득·분석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 •전문성 높은 독립이사 법적한도 달성 어려움 및 이사회 구성 및 회사 운영 차질 초래 우려
			감사위원 인사 시 3%를 적용	•3%룰이 모든 위원에게 적용 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감사위원 선임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 현저히 높아짐. 이에 감사위원회가 일정 기간 구성되지 못하거나 무력화 가능성 높음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사모펀드 등이 지분을 쪼개고 특수관계인 범주인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의결권 확보로 감사위원회 장악 및 내부정보 유출, 전략정보 외부 유출 등 실질적 경영리스크 작용 가능

				•실질적 경영권 침해권 침해 불가피. 외부 적 대자본에 의한 감사위원 선임 및 경영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 제고로 경영 판단 자율성 훼손 구조 발생. 미국 포이즌필이나 프랑스·일본의 창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 부재로 제도 설계가 일방적이라는 우려가 상당함 •이사회 구성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장기 투자 및 위험 감수 전략적 의사결정 경영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음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통상적 방어수단 없이, 외국계 투기자본 영향력이 확대되는 구조 형성으로 한국 기업의 경영권 안정성 저해 및 글로벌 시장에 한국 기업의 신뢰도와 가치 하락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심화 우려
2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8.7 여당, 노란봉투법 신속 처리 발표 8.12 경총, 국회의원 전원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위 범위 확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위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지나친 확대 해석시 사용자성이 명확히 규명이 안된 협력·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쟁위 시도가 무분별해질 것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 혹은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노사 간 정의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커서 헌법상 근로삼권의 본질에 벗어날 가능성이 큼 •기업이 법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분쟁 가능성을 높임 •경영·인사 등 노사 자율 영역까지 분쟁을 확장해 파업 장기화 초래. 이에 해외 투자와 국내 기업 활동의 위축 불가피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및 감경/면제, 청구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면책권 부여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사용자 재산권 등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 우려 및 법치주의 근간 훼손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켜 법적 억지력을 무너뜨리고 경영 환경의 안정을 해침 •피해기업의 손실 회복을 어렵게 해 경영 안정성 저해 •노사책임 균형 붕괴로 과격한 투쟁 조장, 파업 만능주의 확산 및 사회갈등 장기화 우려

				•강도 높은 노사분규는 국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3	정부 세제개편안	7.31.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인상 (과표구간별 세율 1%p 인상)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 OECD 평균 최고 법인세율(23.6%)보다 웃돌며, 미국 25.6%, 캐나다 26%, 프랑스 25.8%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임 •복잡하고 누진적 과표체계: 법인세 과표구간별 세율은 4단계 누진적으로 복잡하게 운영되는데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단일 과표체계 적용, 10개국은 2단계, 영국·룩셈부르크는 3단계인 반면, 4단계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이에 매출 규모 커질수록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기업 성장 유인 저하 가능성 높음 •기업 경영환경 악화 법인세 위주 증세안: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증가분 중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비중이 절반을 넘김. 기업들의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속에 고금리,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의존도 높은 국내 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 •대외변수 속 글로벌경쟁력 악화: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투자 병행도 요구되나 법인세 부담까지 증가 시 기업들의 투자감소, 고용 축소, 성장동력 위축 등 글로벌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50억원→10억원)	•지수 하락 등 시장의 민감한 반응: 시장은 정부 논리 보다 '정책 신호'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해 발표 직후 코스피·코스닥은 각각 3.88%·4.03% 급락, 외국인과 기관은 하루 동안 1조원 이상 매도 •고액 자산 기준 현실설정합성 문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 10억원 보유 주식을 '고액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성·정합성 부족 •조세형평성 차원 시장신뢰 악화 요인 작용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라는 구조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반복될 가능성 높아 정책설계 목적과 효과 간 괴리 존재 •정부가 자산시장 구조 개선 위해 주식 투자를 대체투자 수단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면, 양도세는 단기과세 수단이 아닌 장기 보유에 대한 유인 설계로 재편되어야 함 •대주주 기준의 종합고려다변화 필요: 보유금액 기준 외 지분율, 보유기간, 실질적 지배력 여부 등 종합 고려 과세 체계 필요. ‘대주주 기준 환원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함 •세수 확대라는 단기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신뢰 훼손과 투자 위축이라는 구조적 손실이 훨씬 클 것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부담 완화 효과 미비: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실질적 수혜 대상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할 것. 최고세율이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상위 투자자나 연기금·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 세부담 완화 효과 적음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 도입 필요성: 장기적 기업 배당성향 제고 및 자본구조의 건정성 확보에 기여.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대상,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2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으로, 종합과세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임. 단기적으로 2,500억원 규모 세수감소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거래세·법인세 증가로 수조원 규모 세수 확대 가능할 것임